

# 국 민 안 전 처

## 주 의 요 구

제 목 ○○지구 우수저류시설 특허공법 선정 등 부적정

기 관 명 해운대구

내 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폭우 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켜 재해를 예방하고자 【표 1】 과 같이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해운대구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사업비(백만원) |        |        | 주요사업 내용                       | 도급자     | 비고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
| '15~'18 | 21,384   | 10,692 | 10,692 | 우수저류시설 설치 3개소<br>V = 36,750m³ | (주)○○건설 |    |

※ 자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출자료 재구성

### 1. 계약부서의 계약 심사 등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요령’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에서는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인 ○○과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인 ○○과와 사전 협의과정 및 사전에 계약심사부서에 심사<sup>52)</sup>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여 특허공법의 필요성 및 사업비 절감 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 2. 수의계약 체결 및 지구별 다른 특허공법 적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지구 내 0~0지구의 우수저류시설에 대해 설치공법으로 프리캐스트(PC)<sup>53)</sup> 방법으로 정하여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8곳으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때 본 건의 특허공법에 대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52) 해운대구청에서는 ○○지구 우수저류시설 특허공법을 선정하면서 특허공법 선정 후인 2016. 9. 28. 계약부서인 ○○과의 심사를 받음

53) 공장에서 제작한 벽체, 기둥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체를 형성하는 방법

또한 같은 ○○지구 내에 있는 0~0지구는 지반 등의 공사여건이 유사함으로 각 지구별로 별도의 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사 등을 통해 각 지구마다 해당공법 적용의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해운대구에서는 이러한 조사나 근거자료 등에 의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표 2】와 같이 3개 지구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특허 공법을 선정<sup>54)</sup> 시행함에 따라 최저가 공법(제0지구)에 대비하여 제0지구는 사업비가 137%, 제3지구는 117%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였다.

【표 2】 해운대구 ○○지구 우수저류시설 지구·특허별 사업비 비교

| 구분         |    | 제1지구                                          | 제2지구                                | 제3지구                                |
|------------|----|-----------------------------------------------|-------------------------------------|-------------------------------------|
| 공법         |    | 양단부<br>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br>합성거더를 이용한 조립식<br>슬래브교 시공 | 조립식 저류조 구조물<br>및 상기저류조 구조물<br>시공    | PC패널을 이용한<br>트윈월 구조체 시공             |
| 시설용량       |    | V=7,000m³<br>A=1,400m²<br>H= 5.0m             | V=21,000m³<br>A= 3,000m²<br>H= 7.0m | V=10,000m³<br>A= 1,670m²<br>H= 6.0m |
| 사업비<br>(원) | 단가 | 134,857                                       | 184,380                             | 158,000                             |
|            | 총액 | 944,000,000                                   | 3,872,000,000                       | 1,588,000,000                       |
| 도급업체       |    | (주)○○○○산업                                     | (주)○○○○○                            | (주)○○○○○                            |

## 조치할 사항 해운대구청장은

**[주의]** 향후 특허공법에 의한 사업추진 시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과정을 생략하거나 공법선정 비교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4) 해운대구 자체 특허·신기술 공법선정심의회를 통해 1~3순위를 정하여 사업비가 많은 업체부터 내림차순으로 시공업체 결정(관련법등에 근거가 없음)